

의안번호	2207878
의 퇴 인	박지원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계번호	24D5172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5조의2 (중계방송 허용 등) 신설	·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)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(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(제1항) ·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함(제2항)	재량·의무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5조의2 (중계방송 허용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지방의회 중계방송시 한국어수어, 폐쇄자막 등 제공 근거 마련(안 제75조의2)
 -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둔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,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지방의회 중계방송시 한국수어, 폐쇄자막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, 지방의회의 한국수어 통역사 채용 및 자막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 중계방송의 연평균 방송시간과 한국수어 및 자막 제공 단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
 - 다만, 현재 각 지방의회의 중계방송시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며, 각 지방의회 중계방송의 연평균 방송시간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 국회방송(NATV)의 경우,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화방송·자막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등을 편성·제공하기 위한 ‘국회방송의 장애인 시청지원’¹⁾ 사업에 1,282백만원(2025년 기준)이 편성됨
 - －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방송 자막 제공에 대하여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음. 자막 제공에 대한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으며, 인터넷의사중계의 연평균 방송시간은 약 2,400시간²⁾임
 - 생방송: 분당 1,748원 (2024년 기준)
 - 녹화방송: 분당 1,223원 (2024년 기준)
 - － 한국수어 통역사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전주시에서 일반임기제 7급,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(2023년도)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음³⁾

1) ‘국회방송운영(2036-300)’세부사업의 내역사업임

2) 2017~2019년 기준

3)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 참조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